#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0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조인철・황정아・최민희

박민규・김 현・정동영

이훈기 • 노종면 • 김우영

이정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 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 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,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"을 "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(任免)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이 경우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한다"를 "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"로 한다. 제13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"을 "이사장을 포함한"으로, "9명으로"를 "13명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"을 "이사는 제1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"으로, "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"를 "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"로

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제2호 중 "개인"을 "개인(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제외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중 "임기 및 결격사유에"를 "임기에"로, "제10조와 제11조를"을 "제10조를"로 한다.

- 1.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명
- 3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 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·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
  - 가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
  - 나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
- 5.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
-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
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교육학·방송학·언론학·전자공학·통신공학·법률학·경제학·경영학·행정학 그 밖에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2.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3. 교육·방송·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- 제13조의3(이사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4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7.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,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)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의2. 사장의 임면제청

### 5의3.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 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 시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- 제4조(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교육방 송공사의 이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9조(임원) ① (생 략) 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-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대통령이 임면(任免)----. 이 를 받아 임명한다. <후단 신 경우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 설> 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③ -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. 방송통신위원회에서-----. ④ 부사장은 사장이 <u>임명한다</u>. ④ -----임명하되.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사장·부|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-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한다. -----하되.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② -----이사장을 포함한------13명으로-----.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.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| ③ 이사는 제13조의2 각 호의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-----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-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

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.
  - 1.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
  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 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
  - 3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 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 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・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
  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 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가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나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 천 1명
  - 5.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
  -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 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 서 신설>

⑦ (생략)

-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(생 략)
- 2.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 2. -----개인(공사의 이사 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

1명
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, 공모 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⑤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- -----. 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사항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- 9 -----
- 1. (현행과 같음)
- 및 임원은 제외한다)-----

3. (생략)

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<u>제10조와 제11조를</u> <u>10조를</u>-----. 준용한다.

<신 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⑩ -----레기에-----제

제13조의2(이사의 자격요건)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교육학 · 방송학 · 언론학 · 전 자공학 · 통신공학 · 법률학 · 경제학 · 경영학 · 행정학 그 밖에 교육 · 방송 ·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 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 거나 있었던 사람
- 2. 교육·방송·언론 관련 단체 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. 교육ㆍ방송ㆍ언론 분야의 이 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<신 설>
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
- 제13조의3(이사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- 2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사람
  -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

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    사람
  - 4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 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5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- 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

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7.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에 따 른 방송문화진흥회, 「방송 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또 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종 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 한정한다)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 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사장의 임면제청 5의3.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 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	<u>장의 임명동의</u>
6. ~ 12. (생 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